

2017년 공직유관단체 대상 부패영향평가 교육

2017. 5. 15.(월) 14:00~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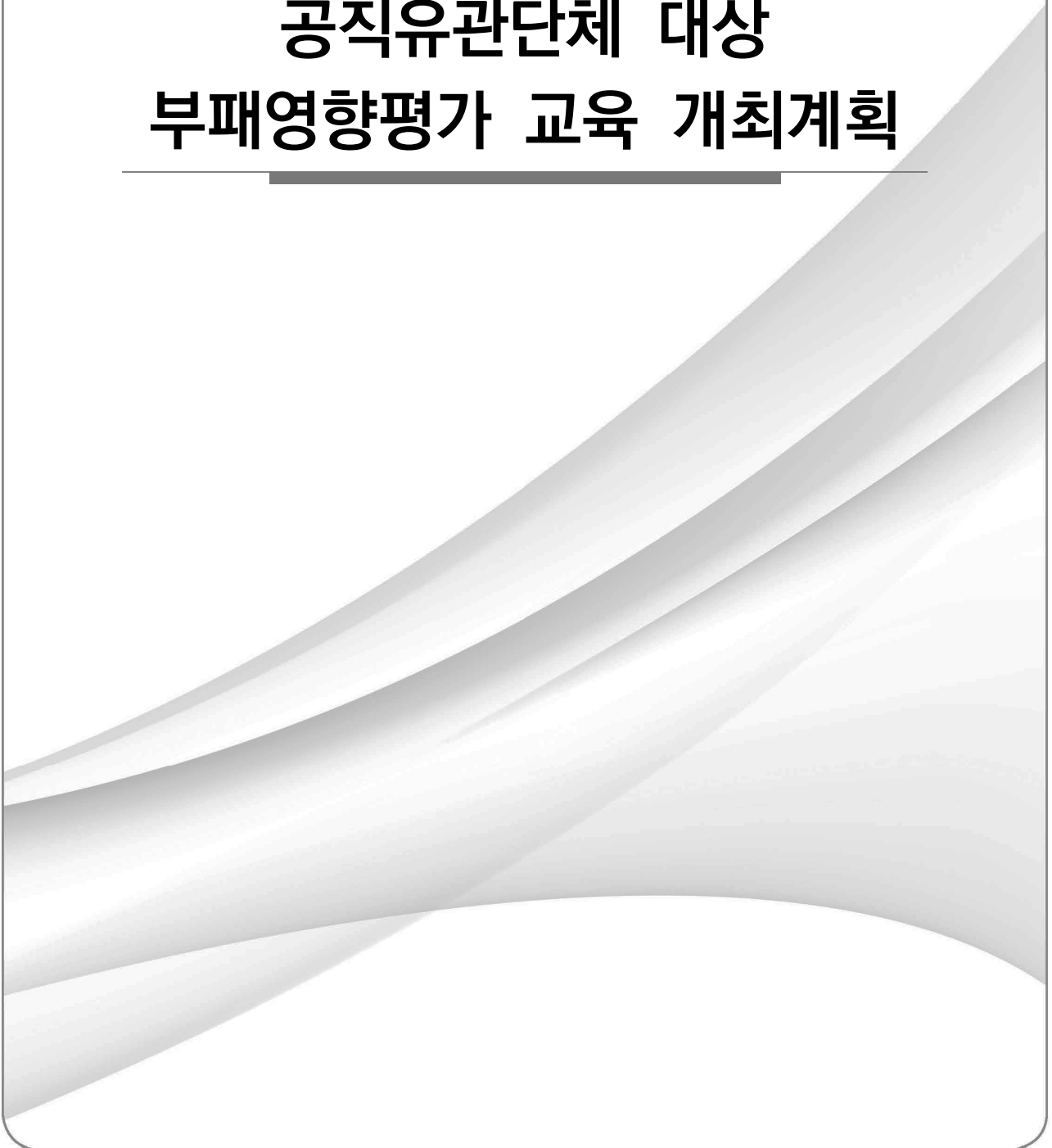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Contents

➤ 공직유관단체 대상 부패영향평가 교육 개최계획	1
➤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5
01. 부패영향평가 제도	7
02. 평가기준	13
03. 사례로 배우는 평가기준	14

**공직유관단체 대상
부패영향평가 교육 개최계획**



공직유관단체 대상 부패영향평가 교육 개최계획

1. 집합교육

□ 행사개요

○ 일시 및 장소

- '17. 5. 15(월) 14:00~16:00,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

○ 참석대상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 130개 중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별 시책평가 담당자 1인 및 사규 제·개정 절차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법무 담당자 1인(기관별 2명)

※ 수요조사를 통해 참석 인원 확정 예정(기관별로 3인 이상도 신청 가능)이며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기관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

□ 주요내용

○ 부패영향평가 제도 설명

- 부패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부패', '부패유발요인' 등 기본개념 등

○ 평가기준별 검토요령 및 자율평가 사례 설명

- 부패영향평가 11개 평가기준별 검토요령 설명 및 공직유관단체 자율평가 사례 소개

□ 교육 세부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15	15'	등 록,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15~14:20	5'	인사말씀	부패영향분석과장
14:20~15:30	70'	부패영향평가 제도, 검토요령, 사례 소개	부패영향분석과장
15:30~16:00	30'	질의응답	이주현 사무관

2. 사이버교육

□ 교육개요

○ 수강기간 및 수강방법

- '17년 청렴연수원 사이버 청렴교육운영계획 기준 제5기~제11기 과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activhi.go.kr)에서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강의 신청 및 학습

〈 교육 이수 대상 사이버 강의 교육일정 〉

기수	교육기간	수강신청기간	수료통보일
5	5월 31일(수) ~ 6월 13일(화)	교육시작일 9:00시 ~ 마감시까지	교육 종료 이후
6	6월 21일(수) ~ 7월 4일(화)	교육시작일 9:00시 ~ 마감시까지	
7	7월 12일(수) ~ 7월 25일(화)	교육시작일 9:00시 ~ 마감시까지	
8	8월 16일(수) ~ 8월 29일(화)	교육시작일 9:00시 ~ 마감시까지	
9	9월 6일(수) ~ 9월 19일(화)	교육시작일 9:00시 ~ 마감시까지	
10	9월 27일(수) ~ 10월 10일(화)	교육시작일 9:00시 ~ 마감시까지	
11	10월 18일(수) ~ 10월 31일(화)	교육시작일 9:00시 ~ 마감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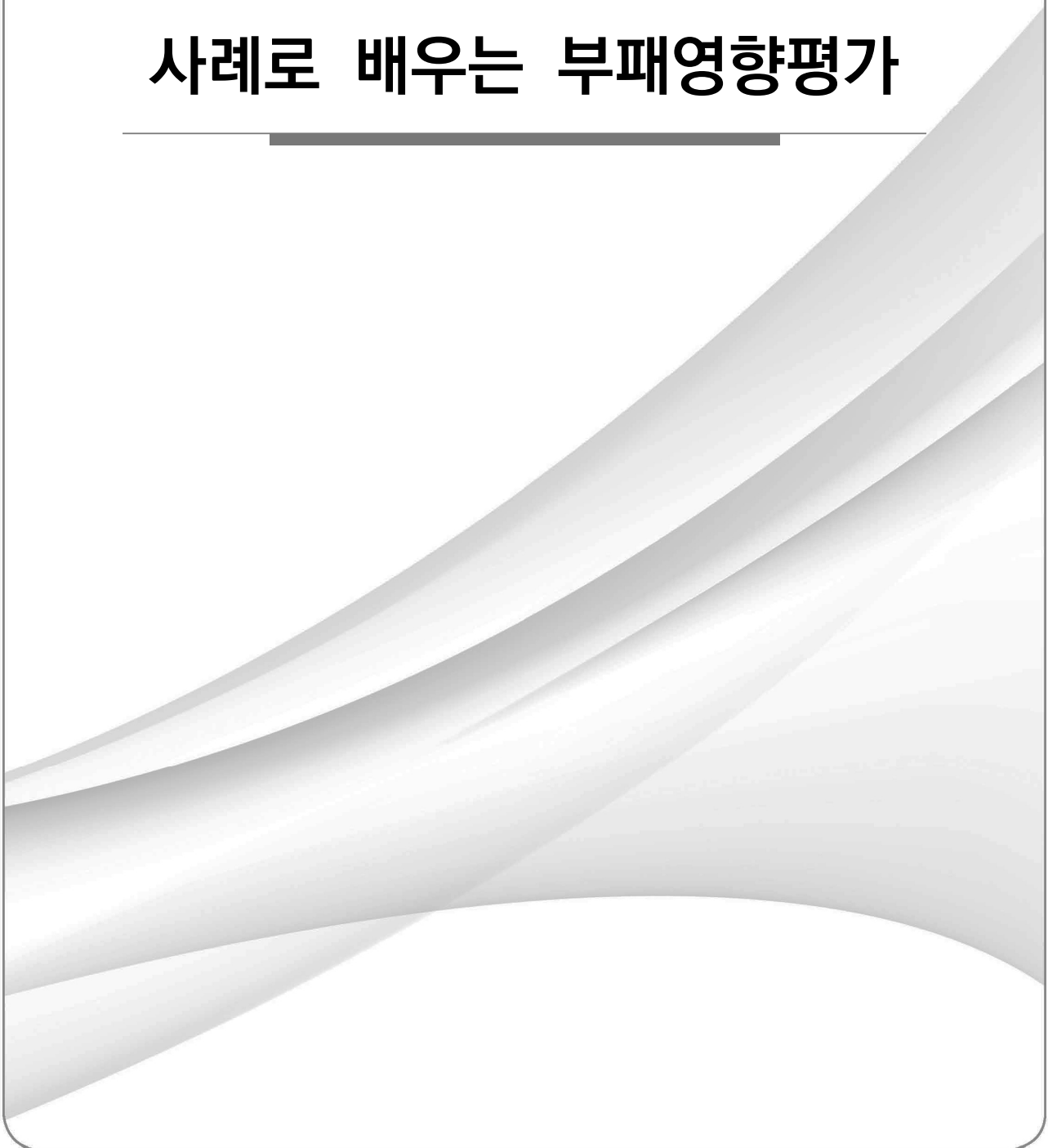
○ 수강대상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 130개 기관 중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관별 시책평가 담당자 1인 및 사규 제·개정 절차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법무담당자 1인(기관별 2명)

□ 교육이수 인정 방법

- (인정기준) 진도율 90% 이상 및 종합평가 60점 이상으로 강의 수료
- (증빙방법) 기관별 수강대상자 2인의 사이버교육 수료증 및 강의 수강 당시 업무분장표 제출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2017 부패영향평가 교육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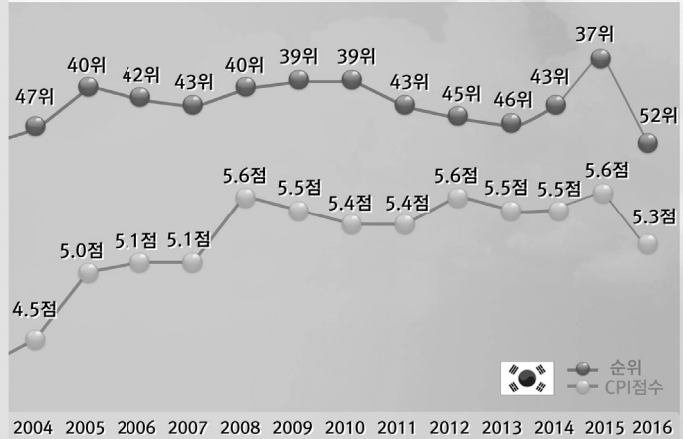
청렴한 세상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01 부패영향평가 제도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부패인식지수(CPI)

※ 출처 : 국제투명성 기구(TI, '17.1월)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 중인 부패인식지수(CPI)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부패영향평가 도입 배경

기존 부패방지정책의 한계

부패영향평가 도입



개별사안별로 사후 적발 · 처벌 중점의 소극적 통제

✓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부패발생에 대한 사전예방기능 취약

(부패발생예)

- ✓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
- ✓ 행정기관의 과도한 규제권한
- ✓ 불투명한 처리절차를 담고 있는 법령이나 재량준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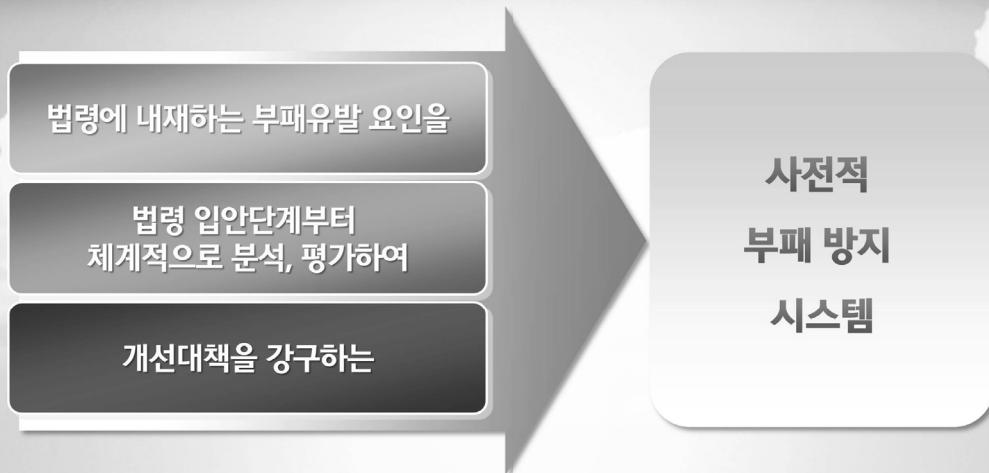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 평가하는 사전적 부패방지 시스템



「부패방지법」 개정(05.12.29.)을 통해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 시행(06.4.1.)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2007년 12월 28일부터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부패영향평가 개념 및 목적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법령 등의 입안·집행 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부패행위의 정의

법령상 ‘부패행위’의 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Definition

0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Definition

0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Definition

03

부패행위 및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패영향평가 대상



법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권익위 평가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자치법규

조례, 규칙

→ 기관별 자율평가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사규, 정관 등

※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의 경우 권익위에서 필요시 직권 평가

※ 자치법규 및 공직유관단체 내규의 경우 필요시 권익위에 평가 요청 가능 (시행령 제30조 제7항~제9호)

부패영향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정관, 사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제정·관리하는 내부규정 중

- ✓ 회계, 계약, 영업, 건설·건축, 자산관리 등 국민생활·기업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정
- ✓ 위탁, 인사, 감사, 조사, 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 관련 규정
- ✓ 기타 부패사건, 감사·수사사건, 국회요구 등에 의해 개선 여지가 있는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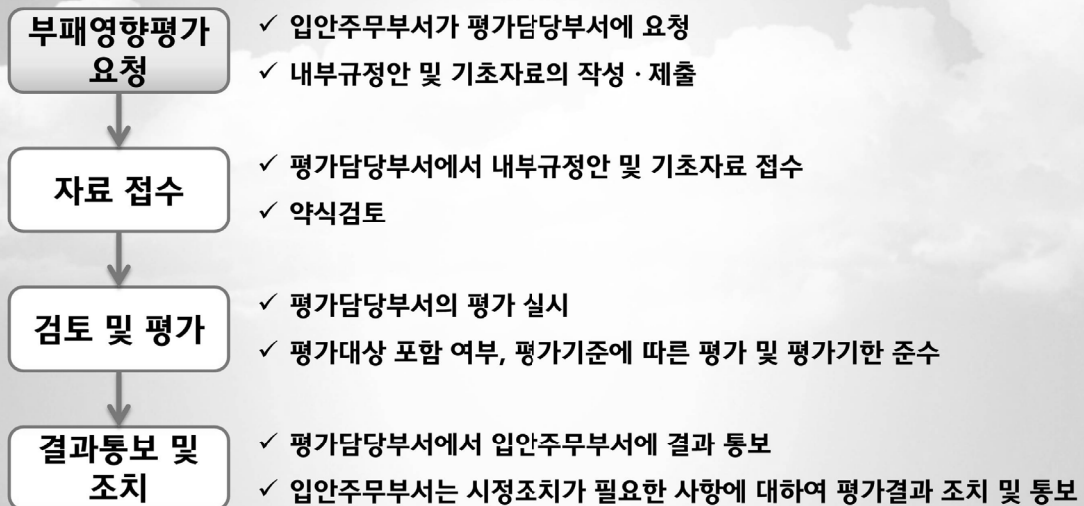


기관별로 평가 제외 대상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

- ✓ 기관설치, 행정관리, 조직운영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의 내부규정
- ✓ 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각종 휴양·복지·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내부규정
-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평가 담당부서 직권으로 평가 가능
- ✓ 예) 소속·산하기관 직제, 당직·비상근무, 회의규칙, 체육시설 이용규칙 등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자료 작성 - 기초자료

서 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명	평가하고자 하는 규정의 「상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법령명)을 기재 (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형 식	정관, 규정, 세칙, 지침 등
규정 명 (정관, 규정, 시행세칙, 지침 등)	평가대상 규정명
소관부서	입안주무 부서
	평가담당 부서
	부서명(내·국문 표기)
	담당자 직·성명 / 연락처
제·개정 일정(예정)	관계 부서 협의
	협의 기간
	완료예정일
	의견수렴일자
별도 붙임자료	1. 제·개정 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가 있는 경우 기재 2. 필요인 경우 부패유발요인제정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평가 대상인 내부규정과
담당부서 및 제·개정 일정 명시

✓ 「법령명」란은 상위법령이 있는
내부규정 평가의 경우에만 기재

부패영향평가 자료 작성 - 세부평가서

서 식

세부 평가서	
☒ 규정명 :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 (평가기준) 부패영향평가 11개
기준 중 해당 사항 적시

✓ (현황) 평가사항 관련 현황
통계자료, 분석자료 등 작성

✓ (문제점) 평가대상 사규에서
기인하는 부패유발요인 작성
- 내·외부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자료 인용

✓ (검토결과) 사규 개선 내용 적시
및 개정 전·후 조문 비교

02 평가기준

평가기준

부패영향평가 기준의 주요 검토 내용

준 수	집 행	행 정 절차	부 패 통 제
1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 의무 등의 준수부담이 합리적 수준인지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사항을 명확히 규정 과도한 재량권 행사 통제	7 접근의 용이성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확보, 참여기회 보장	10 이해충돌가능성 사적인 이해 개입 방지를 위해 기준,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 마련
2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권한, 사무의 위탁·대행 시 관련 규정의 명확성, 관리·감독장치 마련	8 공개성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에게 충분한 정보의 공개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내부 부패통제장치 도입, 부패방지법령 등의 적용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여부
3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개인에게 특혜·수익 발생 가능성	6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기금 등의 자원기준 불명확,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 및 관리·감독장치 마련 여부	9 예측가능성 민원인 입장에서 준비서류, 조치 사항, 처리과정, 기한 및 결과 등 확인 및 예측 가능	

03 사례로 배우는 평가기준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의 의

규정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 내부규정 적용 대상집단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



준수부담이 과도하면 적용대상자 입장에서는 뇌물제공 등 대가를 지불 해서라도 그 부담을 면하거나 완화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 → 부패유발요인

CHECKLIST

-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부과가 반드시 필요한가?
-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
- ✓ 행정편의주의 시각에서 필요이상으로 부담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부담의 완화 가능성은 없는지?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사례

재산 관리·처분 업무세칙

개 정 안

제25조(입찰보증금)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공사가 지정한 가상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해당 조문 없음

자율 평가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재산 대부·매각 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로 정하여 운영, 최저입찰금 초과분은 전부 국고 귀속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규정
- ✓ 법령과 사규 내용의 충돌, 입찰보증금 최저금액 초과분을 모두 국고에 귀속하여 입찰자의 혼란 및 과도한 경제적 부담 야기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입찰보증금을 법령에 근거한 5%로 조정
- ✓ 낙찰자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입찰금 초과분을 낙찰자에 반환

개선권고(안)

제25조(입찰보증금)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공사가 지정한 가상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낙찰자가 제33조제3항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의 최저금액을 국고에 귀속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최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입찰참가시 등록한 낙찰자의 예금계좌로 반환한다.

준수 제재규정의 적정성

의 의

내부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정도가 과도하거나 미약하여 부패를 유발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대상 집단은 추가적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처벌을 회피,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약하면 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할 가능성

→ 부패유발요인

CHECKLIST

- ✓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 다른 법령, 내부규정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데 적정한가?
- ✓ 당해 제재내용 외 다른 효과적 제재방법이 없는지?

준수 제재규정의 적정성

사례

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없음

※ 14년 1월 신용카드사가 보유중인 고객정보
1억건 이상의 부당이용·유출 발생

자율 평가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 ✓ 금융업계 부패행위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이에 대한 제재 미비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금융업계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잠재적인 부패유발요인 억제

개선권고(안)

[별표]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

* (위반건수) 부당이용: 정보주체수X부당
이용일수
유출: 정보주체수X유출횟수

제재양정	부당이용	유출
업무정지(정직)이상	500건 이상	50건 이상
문책경고(감봉)	50건 이상	5건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5건 이상	1건 이상
주의	1건 이상	-

준수 특혜발생 가능성

의 의

내부규정 등으로 인해 특혜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
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



내부규정 등으로 인해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획득하거나 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불법로비의 가능성 존재 → 부패유발요인

CHECKLIST

- ✓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에게 수익 (반사적 이익 포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혜택이나 이익 등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은가?
- ✓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준수 특혜발생 가능성

사 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관리 요령

개 정 안

제6조 (채용의 원칙) ③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로 제한한다.

1. 법령에 의하거나 정부지시가 있을 때
2. 보직예정직무에 상응하는 자격자를 채용할 때
3. 고용기간이 6개월 이내 단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자율 평가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공사업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 공직자와 직원가족은 정규직원으로 특별채용 금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은 해당 조항 없음
- ✓ 채용비리는 특별채용으로 많이 이루어지며,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 후 정규 직원으로 전환하는 사례 빈발
※ 2014년 광양시의유사 부패 사례 제시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공사업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 공직자 및 직원가족 특별채용 금지 조항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채용에도 적용
- ✓ 인사 평가의 공정성 강화로 인사비리 발생 가능성 축소

개선권고(안)

제6조 (채용의 원칙) ③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로 제한한다. 다만 공사업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 공직자와 직원가족은 특별채용 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거나 정부지시가 있을 때
2. 보직예정직무에 상응하는 자격자를 채용할 때
3. 고용기간이 6개월 이내 단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의 의

재량권자, 재량범위 · 기준 · 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에 구체적 ·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행정의 전문화 · 다양화에 따라 담당자에 대한 재량권 부여 불가피, 그러나 추상적 · 다의적 규정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 · 남용될 소지
→ 부패유발요인

CHECKLIST

-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재량 행사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 ✓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재량권 행사범위가 과도하지 않은가?
- ✓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의 범위를 넘어 하위규정으로 과도하게 재량권을 위임하고 있지 않은가?
-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사례

재무운영규정

개정안

제17조의3 (적립금의 사용)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사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호사업비축적립금의 경우 각 기관은 본사의 승인을 받아 우선 사용하고 매년도 결산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율 평가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구호사업비축적립금은 긴급을 요하는 구호활동 시 행정절차에 의해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적립금과는 달리 운영위원회에 사후 보고
- ✓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호사업비축적립금의 사용처가 포괄적
- ✓ 긴급을 요하지 않고 구호비로 집행해야 할 정기적인 구호물자 구입비나 생계지원용 물품 구입비까지 구호사업비축적립금 사용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운영위원회 사전승인의 예외적 허용사항인 구호사업비축적립금의 구체적 사용처 명시
- ✓ 즉시 사용, 긴급을 요하는 구호활동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개선권고(안)

제17조의3 (적립금의 사용)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사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호사업비축적립금 중 국내외 긴급구호 활동을 위한 사용의 경우 각 기관은 본사의 승인을 받아 우선 사용하고 매년도 결산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집행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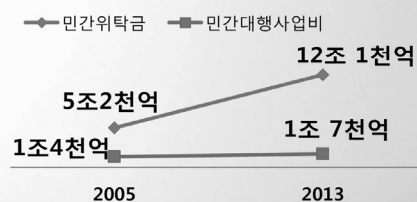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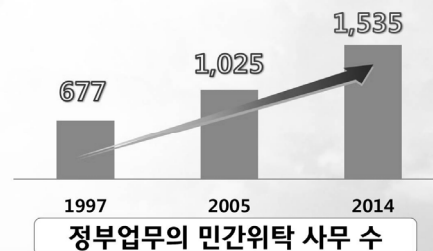
행정권한·사무의 위탁·대행 등에 대하여 개별 규정에 근거,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



행정권한의 위탁 및 행정업무 대행이란?

- (위탁) 행정기관이 법령상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민간 등에 주어 수탁자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
- (대행) 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과는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한 것처럼 보게 됨

※ 민간위탁과 거의 유사, 실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음



집행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근거 규정에서 위탁·대행 권한과 사무, 수탁자 선정 요건, 관리·감독 규정 등이 불명확한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의 불법로비 및 자의적인 행정처리로 연결될 소지 → 부패유발요인

CHECKLIST

- ✓ 위탁·대행의 근거·요건·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 ✓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 계속적·형식적·독점적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 ✓ 수탁기관 및 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규정이 있는가?
- ✓ 수탁기관 및 대행기관의 위법 행위 시 제재규정이 적정한가?

집행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사례

※ 적절한 자율평가사례가 없어, 제·개정 법령 평가사례로 대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 정 안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법 제10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권익위 평가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발주처에서 소관부처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과밀업종 구조개선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해 기금 설치
- ✓ 정부업무위탁 대상사무의 범위를 상위법 내용 그대로 중복하여 규정
- ✓ 기금 운용·관리 위탁 후 업무 관련 자료제출, 보고, 정기점검 등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대한 통제수단 결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공단에 위탁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 ✓ 공단의 기금 운용·관리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마련

개선권고(안)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법 제10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현황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기금운용실적을 매 분기 중소기업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집행 재정누수 가능성

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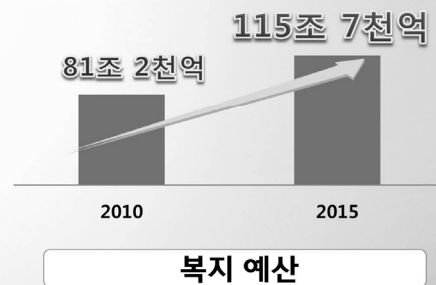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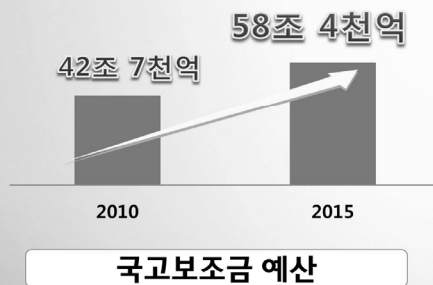
예산·기금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 지원 또는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수단의 규정 여부 등을 평가하는 기준



최근 보조금 규모 증가 등에 따른 부정수급 급증

- 검·경 합동조사('14.1월 발표)에서 약 1,700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감사원 보조금 감사('13.8)에서 약 2,300억원의 복지재정 누수 적발

※ 선진국 재정누수 규모 : 복지지출 대비 영국 2~5%, 캐나다 3~5%, 미국 0.5~5% 추정



집행 재정누수 가능성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자금의 용자 등 재정지원사업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조세감면, 국공유 재산 지원 등 재정지원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중복지원이나 재정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재정누수 초래 가능성 → 부패유발요인

CHECKLIST

- ✓ 재정지원의 근거·요건·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 ✓ 타 법령 또는 규정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 재정 지원 수준은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가?
- ✓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집행 재정누수 가능성

사례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 시행세칙

개 정 안

[별표 16] 4. 자격수당
국가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로서 해당 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2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2종 이상일 경우에는 1종만 지급한다.

자율 평가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국가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2급 이하 직원에게 자격수당 지급
- ✓ (1) 불명확한 자격수당 지급 자격 기준, (2) 보직변경에 따른 수당 상산신청 미통보 등으로 인해 자격수당을 계속 수급
※ 가족초과근무·기술자격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례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자격 관련 허위통보·지연통보·미통보시 벌칙조항 추가
- ✓ 자격수당·자금관리수당·선임수당 등 유사수당 지급제외 조항 신설
- ✓ 부서·업무분장별 인정자격증을 명확히 열거하여 지급기준의 구체성 강화

개선권고(안)

제4조의8 (제수당의 지급자격 변경) ② 임직원이 제1항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6개월 이내 미통보, 허위신고 등 허위의 방법으로 연봉제보수규정 제10조의 해당수당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고 초과지급 기간만큼 해당 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4조의11 (자격수당) 동일업무 유사 자격 수당에 대해서 중복지급하지 아니한다.

<표> 부서업무별 인정되는 자격증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의 의

정책결정 과정 및 이익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참여제도 또는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관계자·관계전문가 등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행정 투명성 확보
→ 부당한 재량권 행사가 감소하고 국민의 감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가능

CHECKLIST

-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제도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 별도의 장치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나 국민이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 ✓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도 투명성 확보
 - 정보유출 등 참여로 인한 부작용 예상
 -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 필요

사례

협력업체운영지침

개 정 안

평가대상 조문 없음

※ 부진 협력업체의 선정, 이에 대한 벌칙은 해당 지침에 이미 포함

자율 평가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부진 협력업체 선정 시 재등록 및 적격심사 감점 부여 등 벌칙을 부과하면서 해당업체의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협력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부진협력업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7일간의 이의신청 기간 통지 등 이의신청 절차 도입

개선권고(안)

제28조의2(이의신청 등) ① 협력업체 관리부서는 제27조제3호에 따라 부진협력업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대상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7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 관리부서는 대상 협력업체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평가를 담당할 협력업체 운영부서에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재평가 요청을 받은 협력업체 운영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협력업체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 의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 판단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 과정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 정보제공 뿐 아니라 관련정보의 적극적 공개 모두 포함(인터넷 게시, 개별통지 등)

CHECKLIST

- ✓ 평가대상 업무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 별도의 장치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및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 정보공개 대상이 특정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사례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

개정안

제82조(채점결과 발표 및 보고)
④국내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의
심사채점 결과(별지 제31-2호 서식)는
공개하여야 하며, 심사채점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참가선수의 선수번호,
과제별 점수, 종합점수, 득점 순위를
포함시켜 직종별 경기장 등에 공개한다.

자율 평가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정부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참가선수는 미래 대한민국 명장을 목표로 훈련하여 대회에 참가
 - ✓ 참가선수 및 지도교사들의 세부 항목별 채점 결과 공개 요구 및 채점 절차에 대한 투명성 의혹
※ 11년~13년 동안 심사채점 관련 이의신청 및 민원 발생건수 평균 3건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채점 결과를 구체적, 세부적으로 공개
- 선수번호, 과제별 점수, 종합점수, 득점순위만 공개 ⇒ 심사채점결과 및 선수 채점표 모두 공개

개선권고(안)

제82조(채점결과 발표 및 보고) ④
국내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의 채점표와
심사채점 결과는 직종별 각 경기장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의 의

내부규정이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

 내부규정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이에 따른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저해되고,
특정 이해관계에 편중된 업무처리 등 부패발생 가능성 → 부패유발요인

CHECKLIST

-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 서류, 소요기간, 처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가?
- ✓ 관련 규정의 표현이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쉬운가?
-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기관이 어디인지, 기준 및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 ✓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이 필요한가?

사례

하자보수보증이행운용지침

개 정 안

[별표5] 용역보고서 작성기준
가. 용역보고서 양식
■ 보고서 양식 및 주요내용

용역보고서 양식 (OOO) (OOO) 20년 1월 1일 OOO 수행기관: OOOO건축사사무소	(주 지) (별표 5) (별표 5) I. 용역 개요 1. 대상건물 개요 2. 하자보수비용 산정 개요 3. 용역수행 일자 II. 하자현황 1. 하자현황조사 일자 2. 하자현황조사 방법 3. 하자현황조사 결과 III. 기초자료 1. 기초자료 목록 2. 내역서 3. 수량산출서 4. 견적서 IV. 품질관리 (주 지) 1. 하자현황조사 2. 하자현황조사
--	---

자율 평가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하자보수이행(이하 하자이행)업무 수행을 위해 지침에 따라 보증책임 있는 하자보수 확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
- ✓ 약정서에 용역보고서 작성기준 준수 의무 관련 조항이 없어, 용역업체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저해
- ✓ 기관 역시 계약이행과 관련한 업체와의 분쟁 가능성, 필수적인 용역결과물 누락으로 인한 업무수행 차질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용역 약정서 및 보고서 작성 기준 개선
- 용역보고서 작성 기준 준수의무 명시
- 용역보고서 구성요소, 작성방법 명시 등 구체적인 작성기준 마련

개선권고(안)

[별표5] 용역보고서 작성기준

■ 용역보고서 구성

1. 표지 : 제목, 사업장명, 제출일자, 수행기관명을 명시합니다.
2. 제출문
1) "용역결과요약문 및 종합의견"
2) "하자보수 기초금액을 기재"
3) 용역약정서에 따라 용역수행 책임자가 반드시 서명 후 제출 등
3. 목차 : 용역보고서 본문 내용 목차 나열
4. 본문 : 본문 내용 및 작성 요령 명시 등
5. 부록
1) 하자현황 사진 : 하자별 컬러사진
2) 하자현황도 : "하자발생 위치 표시 등"
3) 공사비 적용기준 : "하자보수 단가표 등"
4) 엑셀파일 : 공사원가계산 집계표 등

의 의

공적인 업무 추진과정에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여부를 평가하는 기준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게 될 가능성
→ 부패유발요인

CHECKLIST

- ✓ (제척)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 등으로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
- ✓ (기피)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 · 신뢰성 · 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 (회피) 위원 본인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 · 신뢰성 · 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 (해촉)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에 대해 기관장이 위촉을 해제하는 것

사 례

임직원 행동강령

개 정 안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급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자율 평가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병·의원 등이 지급받은 진료비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 형사고발 등 침익적 처분 가능
- ✓ 직무관련자로부터 위법·부당한 청탁 등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상존, 병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임직원의 경우 이전에 근무한 병원과 유착·특혜제공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현지조사 요원의 제척·기피제도 운영
- ✓ 현지조사 요원이 과거 현지조사 대상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반 편성 제외
- 직원 본인의 기관 입사 이전 근무병원 현황 등을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청렴 옴부즈만 의견을 반영한 개선 사례

개선권고(안)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직무관련자가 (기관)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경우

5. 직무관련자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는 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재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의 의

당해 규정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



기관별 부패영향평가 자율평가 시 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타율적 청렴성 제고가 아닌 자율적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신설한 평가기준

- 예시) ▲ 채용·감사 등에서 외부위원 참여 등 민간 참여 확대
 ▲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제한이나 직원 가족의 산하기관 채용제한 등 기관 행동강령 강화
 ▲ 부패신고 대상 확대 및 인센티브 장치 운영 등 부패신고 활성화 장치 마련
 ▲ IT기술을 활용한 전자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CHECKLIST

- ✓ 평가 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사례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 지침

개 정 안

관련조문 없음

자율 평가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제약회사, 의료기업체 영업사원 등 직무
관련자들이 병원 의무직원 등과 불필요하게
접촉하여 부정청탁이나 리베이트 시도 우려
- ✓ '16년도 병원사업장 2곳에서
제약회사로부터 회식비를 대납하게
하거나, 직무관련자와 동호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 관련비용을 먼저 대납하게 한 후
사후정산하는 등 2건의 부패사례 발생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금지 명시
- ✓ 직무관련자가 병원 출입 시 출입대장을
먼저 작성토록 하여 불필요한 출입 통제

개선권고(안)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 지침<제 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사적접촉의 제한

제4조(사적 접촉의 제한)

1. (생 략)
2. 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정책 수립이나 의견 교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학정보 및 학술적
회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5조(대장 작성 및 관리) 각 병원에서는
병원에 출입하는 직무관련자의 출입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